

대학생들이 바라 본 산업재산권의 등록요건



) . . .)

경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2학년

특허

나는 2003년도에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처음으로 했다. 특허에 특자도 잘 모르던 나는 출원하기만 하면 특허가 나오는 줄 알았다. 결과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뭔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기에 당연히 거절되었다. 이제 와서 느끼는 거지만 특허 등록 요건을 제대로 알고 출원하였다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함께 특허의 등록 요건에 대해 상기시켜 보자.

일반적으로 발명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발명에 대해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특허권이다. 발명과 특허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나 새롭고 기발한 발명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몇 가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발명으로서 몇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란 그 발명이 산업에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말한다. 내가 출원한 특허 중에 램 슬롯 장착형 냉각팬이 있다. 이 특허는 꿈속에서 컴퓨터의 램 슬롯에 냉각팬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착안하여 특허를 냈다. 그 당시 생각엔 램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램 슬롯에 냉각팬을 달아야 할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방열판이 열을 식혀주고 있으니 내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대가로 일정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란 발명의 내용이 이전에 없는 발명, 널리 알려지지 않은 발명, 즉 새로운 발명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시점에 있어 그 발명의 내용이 이미 국

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발명이거나, 국내외의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그 내용이 선행기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연구목적이나 실험목적으로 공표된 경우, 발명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개된 경우, 박람회나 전시회 등에 출품한 경우는 그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내 경우에도 신규성이 없어서 안타깝게 등록이 되지 못한 발명이 있다. 핸드폰 충전 케이블 장착형 선풍기라는 발명인데 출원당시 검색했을 때는 분명히 선행기술이 없었는데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료를 납입하고 나니까 선행기술이 있었다. 그것도 23일 차이로 말이다. 마음도 아프고 돈도 아까운 쓰라린 경험이었다.

셋째,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진보성이란 알려진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나는 진보성 문제로 거절 받은 적도 있다. 이것도 휴대폰에 관한 발명인데 휴대폰 배터리모양의 건전지 케이스를 따로 제작하여 필요시 사용자는 컨셉인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내 발명은 기술 수준이 낮았던 것이다. 그렇다.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 특허를 받게 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진보성의 판단은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며 알려진 발명보다 특이성이 있는 경우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발명이 위 요건을 만족시키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처음에는 등록요건도 모르고 특허를 냈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제일 먼저 특허 검색을 하고, 내 발명이 돈이 되는지(돈이 된다는 것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선행기술보다 특이한 발명인지 먼저 생각한다. 많이 출원을 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산업에서 쓰일 수 있고,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면 더 없이 기쁜 일이 아닐까? 나는 오늘도

그러한 발명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순히 제도적인 등록요건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순간부터 위 요건들을 상기한다면 분명 좋은 발명이 나올 것이다.

- 윤창민 씀

디자인

나는 발명특허학과 학생으로서 디자인 출원도 수십 건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것은 벌써 6개월 전의 이야기다. 무더기로 수십 건을 출원한 덕에 등록료 납부고 지서에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통지서까지 지금은 매일매일 등기를 받으며 산다. 이것을 처리하는 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많은 출원 중에 바로 등록된 것도 있으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것도 있다. 디자인권의 경우 그 등록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으나 그래도 지켜져야 할 요건들이 있다.

우선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심사출원과 디자인무심사출원이 있다. 말 그대로 심사를 하고 안하고의 차이인데 무심사출원은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무심사 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포장지, 의복류, 사무용지, 침구류 등을 들 수 있는데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것들이다. 무심사 등록출원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외에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따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나는 연습 삼아 포장지 디자인을 출원하여 보았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한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의 철학을 담아 출원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리석 포장지'이다. 바닥에 까는 대리석모양을 본 따서 포장지로 활용했다. 이 포장지의 특징은 이 포장지로 포장한 선물을 받으면 대리석돌인지 알고 놀란다는 것이다. 다소 엽기적인 포장지의 컨셉이다.

디자인심사출원은 디자인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간단하게 말하면 공업상 양산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 말은 모나리자와 같은 작품은 똑같이 생산해 낼 수 없는 순수미술품이므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이다.

신규성 또한 간행물을 통해서 알려졌거나, 일반대중

들에게 알려진 디자인은 아니어야 한다.

창작성 또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형상 등의 단순 결합 등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바둑판무늬로 출원을 하면 등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선출원주의인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된 디자인과 같으면 안 되는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에 붙은 확대된 왜지 꺼림칙하다. 전체 디자인과 부분디자인, 위성품디자인과 부속품디자인, 한벌물품디자인과 구성물품디자인에까지 선출원주의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쉬운 디자인 출원도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항목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공공기관의 표장이나, 국제기구, 국기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는데 이 조항을 모르는 사람이 디자인검색을 해본 후 아프가니스탄은 못사는 나라라 국기도 디자인등록을 안했다며 출원을 했다가는 거절을 받게 된다. 둘째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은 안 되는데, 저속하고 혐오스럽고 문란한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으로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주는 디자인이어서는 안 되며,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 아! 또 한 가지 등록요건은 아니지만 축척은 맞춰서 내야 된다. 정면도, 저면도, 우측면도든 서로간의 축척은 맞게 그려서 내야 그 형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이것 몰라서 3d로 그린 디자인을 줌인, 줌아웃해가면서 마음대로 축척을 조절해가면서 정면도, 저면도, 측면도를 잡아 도면을 첨부하여 의견 제출통지서를 받았다. 부디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없기를 바란다.

- 김성중 씀

상표

지금은 브랜드시대다. 권혜진!!! 이것은 내 이름이 아니다. 하나의 브랜드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브랜드! 곧 상표로 이미지화되어 표현되는 시대이다. 이 시대에 발맞춰 상표등록을 위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상표의 등록요건은 인적요건, 실체적요건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실체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을 말한다.

첫째, 인적요건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둘째, 상표등록요건인 실체적 요건은 출원의 형식 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인 요건이다.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적극적 요건이라고 한다.

스오깡, ㅇ표깡, 기기니깡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자 뒤에 붙는 깡은 스낵제품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용상표이다. 또한 영동 포도, 영광 굴비, 한산 모시, 대구 사과 같은 경우는 산지표시로서, 성질 표시적상표이다.

또한 산지표시와 비슷한 품질표시가 있는데, 이는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예는 上, 中, 下, 특선, Super 등으로 과일 상자 등에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적극적 상표는 우리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이 순간부터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라! 우

리가 몰랐던 상표들이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 것이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상표와는 좀 다른 성격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비록 상표가 적극적 요건으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표법 제7조에서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극적인 요건의 예로서는 양키, Negro 등은 국가, 민족, 공공단체, 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소극적 요건이다. 또한, 무궁화도형, IMF, WTO 등과 같이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도 여기에 해당이 되며,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도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등록요건을 알아두어야 한다. 여러분의 브랜드에 동기부여를 위하여 몇 개의 유명브랜드이미지를 넣어보았다. 이 잘나가는

브랜드를 보면서 '저것들이 내 브랜드다' 상상해보기 바란다. 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다.



의류브랜드



핸드폰브랜드



전기·전자 브랜드



커피브랜드

이 시대에 주인공 여러분! 자신만의 브랜드를 등록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를 바란다.

- 권혜진 씀

발명특허 2008. 3

